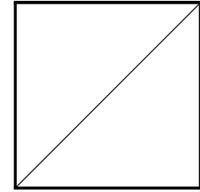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70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5. 12. (제 9 차)	

카카오페이(주)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1. 5. 12.

1. 의결 주문

카카오페이(주)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신청에 대해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카카오페이(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카카오페이(주)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청에 대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감안하여 예비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 법령상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예비허가하고자 함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규 : **【별첨】** 참조

나. 카카오페이(주)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신청 심사보고서 : 별도 첨부

카카오페이(주)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주)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 다 음 —

1. 상 호 : (주)카카오페이
2. 예비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1. 5. 12.
4. 부대조건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위에 필요한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
체계, 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본허가를 신청할 것

【별 첨】

관계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의 요건) 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는 것

1의2. (생략)

1의3. (생략)

1의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 5억원 이상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것

제22조의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4. (생략)

5.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춘 것

② 제1항 각 호(상시고용인력의 경우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설비 : 신용정보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 설비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2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대주주의 요건(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관련)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제9조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	<p>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1)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라.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p>
2. 대주주가 「국가재정	제1호나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p>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인 경우</p>	
<p>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p>	<p>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p>	<p>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나.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 제1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6.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p>	<p>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나목의 요건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4호가목의 요건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5호나목·다목의 요건</p>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 표 제1호다목 또는 제5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위 표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2. 위 표 제5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위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 또는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시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위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6조(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 설비"란 해당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범위와 규모에 비추어 신용정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7조(대주주 요건) 영 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에 필요한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요건

1. (생략)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구성	세부 요건
시스템 구성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가. DB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 서버 시스템 나.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다.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S/W 프로그램 2. 백업 및 복구시스템을 갖출 것 3. 내외부 네트워크 등 통신시스템 구성 등을 갖출 것
보안체계	1.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을 갖출 것

	<p>2.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p> <p>3. 직무분리 기준을 수립할 것</p> <p>4.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마련할 것</p> <p>5. 비상계획, 재해복구 훈련 실시 체계를 갖출 것</p> <p>6. 서버,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p> <p>7.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p> <p>8.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기록 유지할 것</p> <p>9.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같은 규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제8항을 준용한다.)</p> <p>10. 안전한 물리적 보안설비(통신회선 이중화, CCTV 등)를 갖출 것</p> <p>11. 안전한 백업대책을 갖출 것</p> <p>12. 안전한 데이터 암호화 처리방침 및 암호처리 시스템 구축 할 것</p> <p>13. 외부에서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 및 인증수단(VPN 등)을 적용할 것</p>
--	---

[별표 2의2]

대주주의 요건

1. 대주주가 영 제9조제7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의2 제1호 관련)
 - 가.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 나.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제1항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

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 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영 별표1의2 제2호 관련)

가.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3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의 경우 제1호다목(1), (2)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1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제1호다목(1), (2)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

마. 제1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4호 관련)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의 경우 제1호다목(1), (2)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1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제1호다목(1), (2)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4)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

라. 제1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영 별표1의2 제5호 관련)

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나.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

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을 징구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제1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1의2 제6호 관련).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3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4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7. 특례

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해당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2) 해당인이 기금등인 경우: 제2호의 요건

(3) 해당인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4) 해당인이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4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

(5) 해당인이 외국 법인인 경우: 제5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

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라목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제1호다목 및 제3호라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대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라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 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라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

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직위에 임명할 수 없다)

-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다.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디지털금융감독국
연 락 처	02-2100-2696	02-3145-7149